

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활동중 야생동물 등(이하 '야생동물'이라 한다)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를 지원하여 농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 포유류, 독사류를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이하 “농업인”이라 한다)로서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3. “농업생산활동”이라 함은 농업인이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업경영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소”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거창군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농업생산활동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피해신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피해지역 마을 이장과 피해농가 입회하에 피해사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액 산정) 피해액 산정은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비등 실제 본인 부담액을 말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림작물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2. 농업생산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 군수는 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정과장, 환경녹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해액의 산정 및 의결
2.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지원금의 지급) 지원금은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지원금의 청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시에는 노동력 등을 감안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 1. 1부터 시행한다.

야생동물 피해 신고서

	가			
	()			
			o	:
			o	
			o	
<p>4 1</p> <p>.</p> <p>()</p>				
: (,) 1				

야생동물 피해 지원금 청구서

8 2				
.				
거 창 군 수 (인)				
:		1 .		